

 해양수산부 보 도 자 료 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			
보도 일시	2022. 7. 20.(수) 조간 2022. 7. 19.(화) 11:00	배포 일시	2022. 7. 19.(화) 06:00
담당 부서	어촌양식정책관 양식산업과	책임자	과 장 고송주 (044-200-5630)
		담당자	사무관 이광호 (044-200-5631)

친환경수산물 생산으로 환경을 살리고, 어가살림도 피고

-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지급대상자 추가 모집(7.27.(수)~) -

해양수산부(장관 조승환)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(이하 '친환경수산물 직불제') 대상어가를 7월 27일(수)부터 8월 12일(금)까지 17일간 추가 모집한다. 이에 따라 지난 3월 대상어가 총 733어가를 선정한 이후 추가로 약 100어가를 모집해 올해 약 833어가에 총 256억 원의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금을 지원하게 된다.

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보호,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△수산자원보호 직불제, △조건불리 직불제, △경영이양 직불제, △친환경 수산물 직불제 등 4종의 수산공익직불제를 운영하고 있다. 이 중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 친환경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에 지원하는 직불제이다.

이 직불제는 '친환경인증 직불금'과 '친환경 배합사료 직불금'으로 나뉘는데, 먼저 '친환경인증 직불금'은 국민 건강을 위해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(HACCP)*을 준수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양식 어가에게 지원된다. 면적당 품목별·인증단계별로 정해진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친환경 인증을 유지한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**되며,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을 거쳐 올해 12월 경 직불금을 지급한다.

* 넙치, 뱀장어 등 육상양식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해요소(항생제·사료·용수 등)를 사전에 예방·관리하기 위한 위생·안전 시스템

** 품목별, 인증 단계별로 1ha당 53만원에서 약 2억 7천만 원까지 지원

'친환경 배합사료 직불금'은 생사료 대신 수산자원 보호 효과가 높고 사료 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넙치류, 볼락류, 돔류 양식 어가에 대해 사료 한 포대(20kg)당 5,420원에서 12,390원까지의 금액이 지급된다. 기존 대상어가에 대한 직불금은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을 거쳐 4월부터 매월 지급하고 있고, 신규 어가에 대해서는 오는 9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며, 선정된 날부터 사용한 배합사료부터 지급할 계획이다.

* (일반) 5,420원/포대, (고품질) 8,900원/포대, (곤충) 12,390원/포대

구분	준수사항
공통	•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• 생태계 교란 생물 수입 금지 • 어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신고 • 수산관계법령 준수 등
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	• 친환경수산물 인증 •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이행 • 배합사료 사용(생사료 금지) • 양식시설 금지물질 사용금지 등

직불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들은 7월 27일(수)부터 가까운 시·군·구를 찾아 신청하면 되고, 자세한 사항은 시·군·구의 수산 관련 부서에 안내받을 수 있다.

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"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가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려는 어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."라며, "앞으로 친환경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 등에도 적극 노력하겠다."라고 말했다.



참고 1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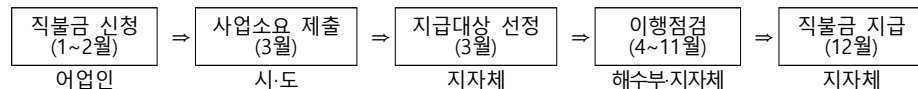
- (지원목적)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, 친환경 양식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양식어업 생산구조 확립
- (근거법률) 수산직불제법 제18조
- (지원대상) 친환경 수산물 인증 획득어가 및 배합사료 사용어가
- (지급요건) 유기·무항생제 인증 등 친환경수산물 인증 또는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 어가를 대상으로 비용 증가분 지원
 - (친환경 인증 직불제) 유기·무항생제 등 친환경 인증을 받은 어업인 또는 법인 등 지원(내수면 양식어업 포함, 국비 100%, '22년 94억)
 - (친환경 배합사료 직불제)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 또는 법인 등 지원(국비 100%, '22년 162억)

<수산공익직불제 준수사항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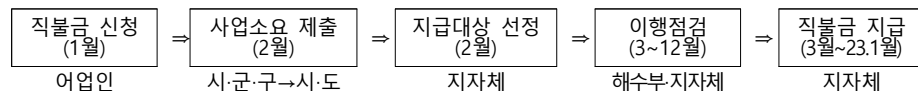
구분	준수사항
공통	•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• 생태계 교란 생물 수입 금지 • 어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신고 • 수산관계법령 준수 등
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	• 친환경수산물 인증 •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이행 • 배합사료 사용(생사료 금지) • 양식시설 금지물질 사용금지 등

- 사업추진절차 : 지급대상 선정자를 대상으로 이행점검 후 직불금 지급

<<친환경수산물 인증>>



<<친환경 배합사료>>



참고 2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도

□ 개요

- (지원목적) 친환경어업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을 추구하고 친환경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
- (근거법률)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 및 제34조

□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(4종)

인증명 (등록대상)	주요 내용	인증표시
유기수산물 (양식수산물)	사육자재(사료,약품), 복지 및 질병관리, 양식공정 등을 관리하고 허용물질 최소한으로 사용하여 생산하는 수산물	
유기가공식품 (수산물 가공식품)	유기수산물 및 유기식품(첨가물)을 원료로 하고 생산시설, 가공공정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생산되는 수산가공식품	
무항생제 수산물 (양식수산물)	양식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항생제 사용 시 지정 휴약기간의 2배 준수 및 잔류량이 법적허용기준의 1/2이하인 수산물	
활성처리제 비사용 (미역 등 해조류 7종)	양식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잡조 및 병해제거를 위해 유기산 등 화학물질이나 활성처리제를 사용하지 않은 수산물	

* 유기가공식품은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대상에서 제외

□ 등록 및 관리절차

단계	인증신청	서류심사	현장심사	인증서 발급	사후관리
내용	생산계획서, 경영관련 자료 등 첨부	신청서류 적정성 검토	인증기준 적합여부 검토	인증등록 통보	인증기준 준수여부 확인 (반기1회)
담당	신청업체	수품원 인증7관	수품원 인증7관	수품원 인증7관	수품원 인증7관

참고 3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관련 사진리플릿

준수사항

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

- 친환경수산물 인증
-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(HACCP) 이행
- 어업경영체 내용 변경 시 변경등록
- 수산물직불제 교육 이수 & 수산관계법령 준수

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

- 배합사료 사용
- 생사료 사용 금지
- 어업경영체 내용 변경 시 변경등록
- 수산물직불제 교육 이수 & 수산관계법령 준수

신청 관련 문의

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불제 관련 문의
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☎044-200-5631, 5632

HACCP 관련 문의
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☎044-200-5620, 5613

친환경인증 관련 문의

부서	전화번호
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	051-400-5760-3
부산지원 품질관리팀	051-602-6050 ~4
인천지원 품질관리팀	032-880-3822-6
인천공항지원 품질관리팀	032-740-2994
서울지원 품질관리팀	02-2660-9630-2
광주지원 품질관리팀	031-8053-7711, 7718
강원지원 품질관리팀	041-956-7398-9
전주지원 품질관리팀	063-276-8525-7
목포지원 품질관리팀	061-288-7304, 7307
완도지원 품질관리팀	061-550-0678-9
여수지원 품질관리팀	061-655-0373-5
제주지원 품질관리팀	064-728-3605, 6313
통영지원 품질관리팀	055-640-3120-4
포항지원 품질관리팀	054-231-0092, 0094
강릉지원 품질관리팀	033-660-7233, 7276

2022년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

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불제란?

친환경어업 실천 사업인에게 친환경어업의 확산과 해양환경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

유기산물 등 친환경수산물 인증 또는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여부를 대상으로 생산비 증가분을 지원하는 제도로 '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'와 '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'로 구분됩니다.

해양수산부

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

인증종류

- 유기수산물 : 사육자재(사료, 약품), 복제 및 질병관리, 양식과정 등을 관리하고 허용물질의 잔류량이 법적허용기준의 10% 이하인 수산물
- 무항생제 수산물 : 양식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항생제 사용 시 지정 종의 기간의 2배 준수 및 잔류량이 법적허용기준의 1/2 이하인 수산물
- 항생제처리제 배합사료 수산물 : 양식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잡초 및 병해제제를 위해 유기산 등 화학물질이나 항생제처리제를 사용하지 않은 수산물

지급대상

✓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(HACCP) 등록을 받은 사람* 중에서 유기수산물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은 어업인 및 법인 등

*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 등 내부양식업으로 허가 받은 양식업자에 한함

지급요건

✓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(HACCP)을 준수한 사람

지급상한

- 양식어가 당 60ha (단, 해안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)
- 각 구상면의 산형 면적 합이 60ha를 초과하는 생산자단체가 공동 신청하는 경우
- 1) 각 구상면 지급한도는 60ha를 초과할 수 없음
- 2) 각 구상면이 생산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급한도는 각 구상면의 생산계약 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

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

지급시기

- 1) 유기수산물 직불금 : 최장 5년(5회)
(지역 유지하면 산지차부터 유기자육으로 50%를 가산 없이 계속 지급)
- 2) 무항생제, 항생제처리제 배합사료 : 최장 3년

지급단가

· 지급액 : 인증면적(ha) X 지급단가
· 530만원 ~ 273만원(단위: 천원/ha)

인증종류	유기수산물	무항생제	항생제처리제배합사료	유기자육
미역류	1,215	-	607	607
김류	1,060	-	530	530
다시마류	1,983	-	991	991
발효미	272,924	136,462	-	136,462
홍합류	2,683	1,342	-	1,342
한다리새우	10,965	5,483	-	5,483
넙치	242,563	121,282	-	121,282
전갱	12,270	6,135	-	6,135
송어	145,088	72,544	-	72,544
매생이	1,191	595	-	595
황우렁이	48,359	24,179	-	24,179
송어	66,594	33,297	-	33,297
미꾸라지	22,636	11,318	-	11,318
황어	18,173	9,087	-	9,087
메기	22,336	11,168	-	11,168

*이 목록 외 추가하는 인증을 받은 품목도 지원(단위: 천원/ha)

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

지급대상

✓ 어업경영체로 등록하고,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(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)에 배합사료 공급업체로 등록된 업체에서 생산한 최소품질기준에 맞는 배합사료를 사용한 어업인 및 법인

지급요건

✓ 지가기부터 출하일까지 배합사료를 사용하여 넙치류, 불락류, 홍합류 사육하는 양식어가

* 배합사료 사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채수준기 등 예외를 둘 수 있음

지급단가

· 지급액 : 배합사료 사용량(1톤당 20kg) X 지급단가

배합사료	지급단가
일반 배합사료	5,420원
고품질 배합사료	8,900원
곤충분 배합사료	12,390원